각 서

본인은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가입 신청자로서 가입일 현재 다음과 같은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약하며, 확약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동 저축 해지 시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의 우대이율 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다. 또한 동 저축의 유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함을 확인합니다.

- 다 음 -

가입 자격 확인	
① 만 19~34세 이하(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)	[확인해
② 연 3천만원 이하(신고소득*) □ 근로소득자 또는 □ 사업·기타소득자 *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, 사업·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	[확 인 햄
③ 아래중 하나에 해당 가. 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(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) 나. 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(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	[확 인 햄

유 의 사 항

- 1. 동 저축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 우대이율은 가입일로부터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직전년도까지만 적용됩니다.
- 2.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으로 전환신규하는 경우 전환원금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3. 가입일(전환계좌인 경우 전환신규일)로부터 2년 미만 해지 시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단,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당첨 사유로 2년 미만 해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4. 동 저축이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되는 경우 통장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- 5. 동 저축에 대해 상계통지가 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계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여 자격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- 6. 비과세 대상, 요건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릅니다.

		년	앤	일
	예금주(본	<u>!</u> 인) :		(인)
	<대리인 제출 시>			
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(날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	인)하여 본인의 <u>(가족관계 기재)</u> 인 <u>(대</u>	<u>리인 성명)</u> 을	을 통해 제출	합니다.
	예금주(본인) : 대리(수임)인 :		_(인) _(인)	

